

현행	개정내용
부칙 이 절차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	

현행

개정내용

별표 1

협력분야 및 소관부서

Ⅰ. 설계엔지니어링 부문

기술분야	활용분야	협력분야	자격요건	소관부서
정보	공통	정보기술	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 및 정보관리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이거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	정보기술 담당부서
		자료관리	정보통신부문의 정보관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	

별표 1

협력분야 및 소관부서

Ⅰ. 설계엔지니어링 부문

기술분야	활용분야	협력분야	자격요건	소관부서
정보	공통	정보기술	(생략)	정보기술 담당부서
		삭제	삭제	